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18호 2017. 9. 7.(목)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45호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 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7-1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 고시 ----- 14
- 사천시 고시 제2017-1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 고시 ----- 15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7-97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16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2)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45호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9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사천시 소속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상근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3)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원장”이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서 정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제3조(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제4조(위치) 어린이집의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내에 둔다.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제2장 보육관리

제6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소속 직원의 영유아로 한다.

제7조(보육대상자 선발) ① 입소 신청 영유아 수가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한부모가족의 부모인 소속 직원의 자녀
2.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입소 신청 자녀가 2명 이상인 소속 직원의 자녀
3. 부부공무원인 소속 직원의 자녀
4. 그 외의 소속 직원의 자녀

② 원장은 원아모집기간 이후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을 대비하여 보육대상자 선발에서 탈락한 자와 원아 모집기간 이후에 입소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입소대기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입소대기자 명부 등재자 중 제1항의 순위에 따라 충원한다.

③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4)

제8조(입소) ①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소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소속 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소속 직원이 자진 퇴소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신분변동일 다음달 말일까지 퇴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퇴소 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육료 등) ① 어린이집 운영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소료와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은 받지 않는다. 다만, 현장 학습비, 교육운영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비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보육교직원

제11조(보육교직원 직무)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2. 보육교사 : 반별 편성된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계획 수립 및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5)

3. 그 밖의 직원 :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2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직무

제12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정한 자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시장이 임면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모집할 때에는 3~5명의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때 면접위원은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00분의 50이상 참여토록 한다.

제13조(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15조(운영) ① 어린이집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직원 수의 결정 및 변동사항
3. 보육료 등의 결정
4. 보육교직원 보수의 결정
5. 보육정원 조정 등

③ 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수탁기간, 운영비 보조, 계약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6)

은 시장과 수탁자의 계약에 의한다.

제16조(운영시간)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 2인
3. 영유아부모 대표 : 4인 이상 5인 이내
4. 어린이집 업무 담당공무원 : 1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영유아부모 위원은 영유아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고, 보육교사 위원은 보육교사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육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한다.

⑨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7)

제18조(비용 부담)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원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영유아 보육관련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8)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

영 유 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입 학 전 경		통학거리		약	km
보 호 자	성 명	(부)	근 무 처	(부)		
		(모)	(직 업)	(모)		
	주 소	(자택전화)				
	연 락 처 (휴대폰)	(부)		(모)		
참고사항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자녀 3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입소대상 2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부공무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위와 같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 각1부.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정한 어린이집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 근무처, 연락처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10년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직장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할 수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9)

[별지 제2호서식]

입 소 신 청 자 명 부

접수 번호	영유아			보호자		주 소	연락처	입소 결정 여부	기록자 (인)
	성명	성별	생년월 일	소속	성명				

특이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10)

[별지 제3호서식]

입 소 승 인 결 정 통 지 서

영 유 아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보 호 자	성 명	(부)	근 무 처 (직 업)	(부)
		(모)		(모)
	주 소	(자택전화)		
	연 락 처			
결 정 사 항		입소예정일 :		
		반 편 성 :		

상기 아동을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11)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생 활 기 록 부

1. 현 황

영 유 아	성 명		성 별		사 진 (3×4cm)
	생년월일		입·퇴소 일 자	입소 퇴소	
	주 소				
	자택전화번호		혈 액 형		
보 호 자	구 분	부	모	기타()	
	소속(직업)				
	성 명				
	근무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근무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데려 오고 데려 가는 사람	성명 : , 아동과의 관계 : , 휴대전화번호				

※ 비고: 보호자란 중 부·모가 있을 경우 양자 모두 기재

2. 생활습관

수 면	
배 변	
식 사	
성 격	
기 타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12)

(뒷 면)

3. 전염병 예방접종

종 류	1회	2회	3회	추가	추가
B. C. G					
D. P. 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경구용 소아마비					
홍역					
블 거 리					
풍진					
장 티 푸 스					
일 본 뇌 염					
콜 레 라					
수두					
간염					

4. 병력기록

병 명	질병발생 연월일 및 질병의 정도	
	입 소 전	입 소 후

5. 성장에 관한 기록

구 분 \ 측정시기							
키(cm)							
몸 무 게(kg)							

비고 : 18개월 미만의 아동은 2개월 마다, 그 이상의 아동은 6개월마다 측정·기록한다.

기록관리자 (인)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13)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

퇴 소 신 청 서

영 유 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보 호 자	성 명	(부)	근 무 처	(부)		
		(모)	(직 업)	(모)		
	주 소	(자택전화)				
	연 락 처					
퇴소사유						
퇴소예정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퇴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14)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7 - 1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 9. 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7-3호(2017. 7. 17.)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지역개발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송포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수산자원조성 등 어촌체험장 조성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759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17-7호
 - 공사기간 : 2017. 10. 01. ~ 2018. 12. 3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17. 9. 4.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15)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7 - 157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 9. 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7-2호(2017. 6. 19.)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지역개발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송포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어촌체험장 조성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1129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17-6호
 - 공사기간 : 2017. 10. 01. ~ 2018. 12. 3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17. 9. 4.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16)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7- 97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폐업한 매매업소 보유자동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9. 7.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9. 7. ~ 2017. 9. 21.(14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경남70도4550	카스타	이*출	2017. 9. 7	폐업한 자동차매매업소 보유자동차
56루3187	그랜저XG(LPG)	강*애		
경남70머2462	체비밴	(주)제일카월드		
15도7258	싼타모플러스	강*환		
12우2162	B M W	한*원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18호(17)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